

<민사소송 항소 전략 ><추가증거제출거리>

1. 피해자의 주량

2. 피해자가 당시에 마신 와인잔의 용량, 도수 / 피해자가 술잘 직접탐음 /

사건 발생 한달 전인 2021.02.24 와인잔을 구매했던 피해자의 영수증, 2개의 다른 와인잔, 하나는 535ml, 하나는 783ml, 피해자가 더 큰 동그란 잔으로 마심. 설령 535ml의 와인잔으로 마셨어도 큰용량.

783ml의 와인잔은 아래쪽이 더 두꺼워 3분의 1을 채웠을때 상당한 양의 술이 담김. _ 소주병 1병을 부어 얼마나 차는지 실험 및 촬영 예정, 잔크기가 크고 시각적으로 술이 줄어드는 양이 소주잔, 언더락잔 과 달라 마시는 양을 가늠할 수 없었던 피해자. 와인잔을 구매한 지 얼마 안되고, 술을 잘 마시지 않아 술조절을 잘 못하는 피해자.

3. 가해자의 지문이 묻어있을 수 있는 양주병

4.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_녹취록에서 가해자가 다마셨다고 말함.

5. 1,2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양_ 가해자가 계산, 피해자가 가진 계산기록 없음. 하지만 술을 좋아하고 그전부터 만나면 피해자에게 술 먹어야한다, 는 술을 좋아하는 가해자의 카톡정황, 1,2차에서 3시간 가량 시간을 보냈으니 절대 적은 양의 술을 먹지 않았을 것.

6. 사건 날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카톡 대화(2021.4.10)에서 막걸리 1.5병을 마시고 취해서 나는 카톡내용, '또---토할때까지 먹었어 찌따야 술을 누가 그렇게 머그랭' 이라고 말한 가해자, 준강간 발생일인 (2021.03.27)일 이후로 피해자가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신 날은 없음. (2021. 04.03) 창원에서 같이 맥주 1병을 덜 마신날은 있음. 하루종일 운전해야해서, 피트니스대회준비로 술을 절제해야했던 가해자, 술을 못마셔서 음주를 안좋아하는 피해자.

7. 2021년 6월 23일 피해자가 막걸리 1병을 마시고 가해자에게 카톡한 날, '막걸리는 위험해---"놈이야년이야"우리공주술도먹었어?"너혼나' 가해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피해자는 주량이 3병이라는 주장은 허위주장이다.

8. 민사소송하며 원고 스스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첨부할 수 있는지 / 또는 사립 거짓말탐지기기관이 있는지 /

9. 2021.03.28 헤어진 후 친구를 만났다는 피해자와 창원으로 내려간 가해자의 카톡에서 친구에게 '사랑한 것도 얘기했나'놀랐겠다' 피해자 '하다가 울다가 욕하고' 당시 정황에 대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

10. 2021.08.07 피해자와 가해자의 녹취록에서 '니랑 내랑 그때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니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뭐?' '쌍욕 꼽았잖아.' -

'나는 그날 술 안먹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안 나. 니랑 내랑 대화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어. 하는데 새벽에 갑자기 니 일어나면서 쌍욕하고 그래서 내가 놀라서. 내가 *** 했을 때 소파에 니가 *** 내려갔잖아 / 실제로는 '일어나면서'가 아니라 "일나자말자' 임 / 해당 분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당시 술해 취해 의식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제정신이 돌아오니 바로 피해자가 쌍욕했다는 의미)

11. 정신없이 소파에 내쫓겨 졌고, 술에 취한 원고는 소파천을 벗기면 페인트가 묻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고, 정황 상 담요나 핫팩을 챙겨 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추위에 떨다 소파의 천을 몸에 감싸다 바지에 페인트가 묻었던 가해자

12. 2021.03.28 헤어진 후 카톡 내용에서 피해자 사무실에 놀러온 동생이 소파를 좋아한다고하니 '그 페인트 묻는 의자'페인트 얘기 안해줬니' 라고 답한 가해자

13. 그 이후 2021.03.28 부터 피해자에게 자신과 이성관계로 만나달라고 말하는 가해자, 3번만 더 만나달라고 하는 가해자, 이태원에 직접 올라오겠다고 하는 가해자, 조용히하고 보자는 가해자, 아직은 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피해자에게 먼저 자기야라고 한 가해자, 보고싶다고 하는 가해자, 나만보고싶은거네? 나만 좋아하나보다, 난 많이좋아. 라고 하는 가해자, '고만해' 라고 하는 피해자. 관계에 대해 혼란을 겪고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이성으로 만나달라는 가해자의 말들

14. 기억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했던 피해자가 당시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말을 2021.06.22 에 기억하고 있는 가해자의 카톡, 이것은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날 당시 성관계 했는지는 2021.08.07 공항 녹취록에서 말하지 못했으면서, 민사소송에서는 허위 소설을 작성해 제출한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1-1. 2021.03.27 준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_ 증거보충_항거불능상태_본인의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셨음

원고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인정이 됨.
 추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

박정은 나 너랑 테이블에서 술 먹고 술 맥주랑 그거 섞은 거 한 잔 먹고 정신 나갔어.

하태원 **원소린데** *** 거기에 있는 거 다 먹었는데.

박정은 몰라. 요즘 나는 뭐 부동산 친구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놀러갈 시간이 없다고 하고 그러는 와중에 나 기억 잃었어. 근데 눈 떴을 때 니가 나 뒤에서 하고 있었어. 나 그날 계단 올라가면서도 절대 너 소파에

원고는 (녹취록의 피고 말을 통해) 원고의 사무실에서 와인잔에 양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다 먹었다. 피고의 말에 따라 와인잔에 따른 술 뿐만 아니라, 기억을 잃고 '거기 있는 것'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양의 술을 더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 양주병 보관 중, 양주병에 피고의 지문이 묻어 있을 수 있음

해당 양주는 도수가 40도이며, 당시 와인잔에 양주를 맥주와 1:1 비율 또는 1:2 비율로 원고 본인이 직접 섞었다. 맥주 평균 도수 5-6도, 1:1 비율일 경우 22.5도, 1:2 비율일 경우 15도 정도. 15~23도 되는 소주보다 높은 도수의 '폭탄주' 였다. 술을 자주 먹지 않았던 원고는 양주 폭탄주의 무서움을 모르고 (1차에서 소주 반병이상, 2차에서 2잔이상의 칵테일을 마신 상태에서) 해당 폭탄주를 2-3모금 마신 후 좋아하는 친구이야기를 꺼냈던 기억만 남긴 채 곧바로 기억을 잃었다. (피고의 말을 빌려) 원고는 해당 와인잔에 담긴 폭탄주를 다 마셨다.

[폭탄주 - 나무위키 \(namu.wiki\)](http://namu.wiki)

< 추가 >

< 사건 발생 한달 전인 2021.02.24 와인잔을 구매했던 피해자의 영수증 >

2개의 다른 와인잔,
하나는 535ml, 하나는 783ml, 피해자가 더 큰 동그란 잔으로 마심.
설령 535ml의 와인잔으로 마셨다고 상대가 주장해도 큰 용량.

6:53 pay.naver.com

N Pay 주문 상세정보

2021022441363841
2021.02.24

영수증조회 내역삭제

클릭주방 슈 무료

전화걸기 문의하기 톡톡하기

-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매확정 이후 상품의 이용방법, 반품 등에 대한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판매자정보 확인하기 >

N Pay +
[스마트스토어] 클릭주방
구매확정 독일 쇼트즈위젤 와인잔 와인글라스 ...
8,700원 19,500원
주문수량 : 1개
옵션 선택: 8.센사 레드와인잔 1p (+) 2,300원
구매확정일 : 2021.03.06

배송조회 재구매

N Pay +
[스마트스토어] 클릭주방
구매확정 독일 쇼트즈위젤 와인잔 와인글라스 ...
6,800원 17,600원
주문수량 : 1개
옵션 선택: 12.아이벤토 버건디잔 1p (+) 400원
구매확정일 : 2021.03.06

배송조회 재구매

6:54

상세정보 리뷰 3,535 Q&A 210

사이즈 : 62x144(mm) 용량 : 420ml 재질 : 유리제 / 원산지 : 독일	사이즈 : 66x158(mm) 용량 : 540ml 재질 : 유리제 / 원산지 : 독일	사이즈 : 72x105x232(mm) 용량 : 710ml 재질 : 유리제 / 원산지 : 독일
13 센사 보르도잔	14 센사 레드와인잔	15 센사 화이트와인잔
		
사이즈 : 72x94x245(mm) 용량 : 660ml 재질 : 유리제 / 원산지 : 독일	사이즈 : 65x88x240(mm) 용량 : 535ml 재질 : 유리제 / 원산지 : 독일	사이즈 : 59x76x225(mm) 용량 : 363ml 재질 : 유리제 / 원산지 : 독일
16 센사 샴페인잔	17 센사 라운드텀블러	18 아이벤토 버건디잔
		
사이즈 : 54x72x243(mm) 용량 : 388ml 재질 : 유리제 / 원산지 : 독일	사이즈 : 65x84x123(mm) 용량 : 500ml 재질 : 유리제 / 원산지 : 독일	사이즈 : 110x220(mm) 용량 : 783ml 재질 : 유리제 / 원산지 : 독일
19 아이벤토 보르도잔	20 아이벤토 레드와인잔	21 아이벤토 화이트와인잔
		

선물하기 구매하기

< 원고의 사무실에 있던 와인잔으로
당시 마신 폭탄주 (양주+맥주) 의 양 추정 실험 1(최대량) >



3.27일 사용했던 와인 잔,
술을 **반정도** 채웠을 때의 용량 추정

해당 잔에 술을 반만 채워 마셨다고 가정했을 때,
종이컵 1잔(192ml)을 꽉 채우고 2번째 잔을 거의 가득 채움(약 180ml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판 중인 대부분의 소주 한 병 용량은 360ml 이고, 소주잔은 보통 50ml, 종이컵은 약 180~190ml 정
도의 용량으로 판매됩니다.

소주잔 한 병은 소주잔으로는 7.5잔 정도가 나오며, 종이컵으로는 1.5~2잔이 나옵니다.

192+180 = 372ml, 만약 **저 잔에 있는 술의 양을 다 마셨을 경우,**
소주 한병(360ml)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도수 15도~22.5도 되는 폭탄주를 마신 것 입니다.
소주잔에 마셨으면 8번에 걸쳐 마셨을 많은 양의 술을
술을 잘 모르는 원고가 큰 와인잔에 따라버리고, 한번에 마셔버려
기억을 잃고, 심신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원고의 사무실에 있던 와인잔으로
당시 마신 폭탄주(양주+맥주)의 양 추정 실험2 (최소량) >



원고의 사무실에 있던 와인잔, 3.27일 사용했던 잔,
술을 **3분의 1정도** 채웠을 때의 용량 추정

종이컵 1잔(192ml)을 꽉 채우고 2번째 잔을 조금 채우는 양

한국에서 시판 중인 대부분의 소주 한 병 용량은 360ml 이고, 소주잔은 보통 50ml, 종이컵은 약 180~190ml 정도의 용량으로 판매됩니다.

소주잔 한 병은 소주잔으로는 7.5잔 정도가 나오며, 종이컵으로는 1.5~2잔이 나옵니다.

192ml+18ml(종이컵 5분의1로 추정계산) = 210ml,
만약 **저 잔에 있는 술의 양을 다 마셨을 경우,**
소주 한병(360ml) 의 **58%이상의 (소주 반 병 이상의)(소주 평균 도수 16.9도)**
도수 15도~22.5도 되는 폭탄주를 마신 양과 같습니다.

소주를 꽉 채운 종이컵 1잔을 한번에 마시게 되면 아무리 술을 잘 먹는 사람이라도 술에 취하기 쉽습니다.

(피고 측은 변론에서 2021년 3월 27일 1,2차에서
마실 술의 양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했다.)

나. 첫 만남(2021. 3. 27. - 3. 28. 원고의 초청으로 서울에서의 만남)

(1) 피고는 원고와 카톡으로 대화를 가져오다가 2021. 3. 27.(토요일)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김포공항으로 마중 나온 원고와 처음으로 만났고, 원고와 함께 지하철로 더서울 현대백화점으로 이동하여(이 때 피고의 캐리어 가방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함) 쇼핑과 식사후 캐리어가방을 찾아 원고를 따라 원고 사무실로가 간편한 복장으로 옷을 갈아 입고 이태원으로 이동하여 1차에서 식사 겸 반주로 술을 마시고, 2차로 '넘버 7'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칵테일 종류의 술을 2잔 정도를 마시면서 포켓볼과 탁구 게임을 즐긴 다음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고 숙소 겸 사무실이 있는 동묘역 근처 GS25 편의점에서 19,250원 상당의 술(맥주와 소주 1병과 안주)을 구입하여 원고의 숙소 겸 사무실로 갔습니다.

술 먹은 양 체크하기
피고가 1차를 계산했고
2차는 여러 번에 걸쳐 주문해서
피고와 원고가 번갈아 계산, 현재
내역은 없음.
3차 편의점 결제액도 피고가 계산.

피고가 술을 실제 사실보다 적게 먹었다고
주장하려면 2021년 3월 27일 영수증을
첨부해라.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다르면
피고가 결제했으니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는가?)

2021-03-27
하다 캐리어를 놓기위해 사무실에 갔고, 사무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열띤 강의를 하태원이 해줬습니다. 저녁6시 정도가 되어서 이태원에 갈 좀 더 편한 옷을 갈아입고 이태원에 갔습니다. 1차로는 탕에 소주(저는 반잔, 하태원은 한잔씩 마셨고 둘이 두병을 덜 비우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2차로는 다양한 게임이 있는 펍에 가서 다양한 술 총 다섯잔? 정도를 같이 맛보며 나눠 마셨던 것 같고(잭콕, 깔루아밀크 등), 피자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차에서 포켓볼, 축구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서로 이태원 같이 놀러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시 코로나 통금시간이 되어 사무실로 향했고, 동시에 나온 수많은 인파로 택시잡기에 실패하고 지하철을 타고 동묘앞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걸음걸이도 말도 너무 멀정해보이는 제 자신을 보고 안취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기전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 4캔 만원, 과자, 초콜릿 등을 사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3차 술자리를 테이블에 펼쳐 준비했습니다. 제 사무실오픈식 때 친구가 사왔던 양주가 남은게 있어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와인잔에 양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신이 멀정한 제 상태를 체크했었는데, 와인잔에 담긴 술을 두모금쯤 마시고 손을 더 댄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도 저도 너무 바빠서 고민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못들은 채 저는 블랙아웃 상태로 빠졌습니다. (당시 네캔을 샀

(실제로는 1차에서 둘이서 소주 2병 조금 안되게,
2차에서 둘이서 칵테일 5잔정도 마셨다.)

(증거가 없는 1차, 2차에서 얼마의 술을 마셨든, 3차 사무실에서 먹은 술의 양은 원고가 먹고 취하지 않기엔 너무 과한 도수와 양이었다.)

1-2. 2021.03.27 준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_심신상실_원고의 평소 주량(반병에서 한병정도)에 대한 입증

하태원과의 교제당시 카톡내용 뒷페이지 첨부

만나면서도 술 같이 (소주 주량 체크할 정도로) 먹은 적 한번도 없음.

4월 3일 조개구이 먹으면서 맥주1병 시키기만하고 남김.

그 이후로는 피고 피트니스 대회준비로 체지방 감량을 해야해서 같이 술 아예 먹지 않음. 그 후로 대회 끝나고 하이볼 한 잔 먹은 적 한 번 있음.

선천적 저혈압을 가진 원고, 저혈액량으로 인한 혈중 알코올 수치 농도 상, 남들보다 불리하다는 소견서

대학 재학시절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 혼자 취해서 기숙사 로비에 거하게 토해서 벌점을 과하게 받았던 사건, 동기 증언 가능

대학 재학시절 동기들과 술집에서 함께 비슷한 양으로 술 마셨는데 원고 혼자 취해서 술집 소파에 토하고 머리가 토로 샤워 된 채로 수치스럽게 기숙사로 갔던 사건, 기숙사 룸메이트의 증언, 당시 같이 술을 마신 동기 남녀 10명 정도의 해당 사건에 대한, 원고는 평균보다 술을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 가능

동기들과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혼자 인사불성이 되고 토를 해서 최악의 수치스러움을 경험했던 원고는 술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술을 잘 먹지 않아왔다. 그 이후에는 신뢰가 쌓인 사람과만 술을 마시고, 적당히 술을 마셔왔다. 대학 졸업 후 술자리가 자주 없어 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뇌속에서 작아지고 있던 중, 피고와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2차 술자리가 너무 즐거워서 술에 대한 경각심을 잠시 잊고 밖에서 취해서 남의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사무실에 와서 긴장감이 조금 사라져 피고를 대접 해야 겠다는 생각에 양주를 꺼내 스스로 폭탄주를 만들고 마시다 기억을 잃는 상태에 처했다.

2021년 4월 10일 오후 8:20 경 원고와 피고의 카톡내용

원고가 친구와 둘이서
등산 후에 막걸리를 3병
마시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집에 가서
토하고 싶다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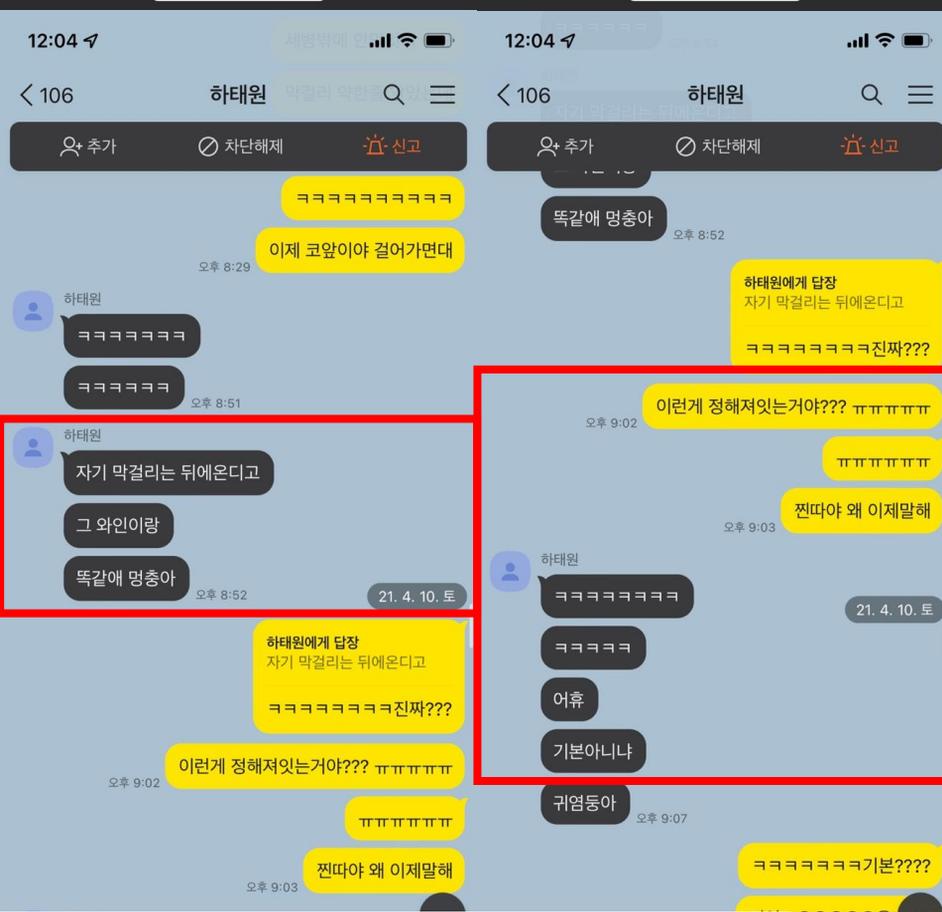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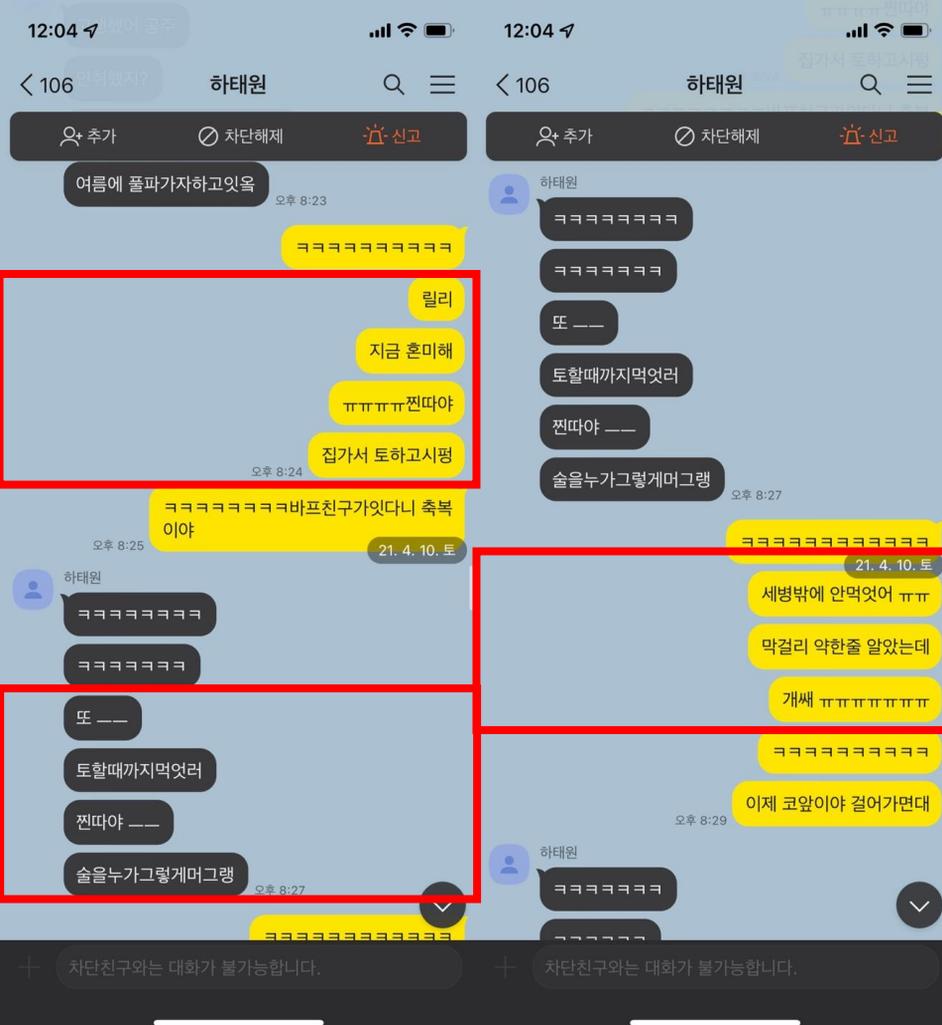
[--- - 나무위키
\(namu.wiki\)](http://namu.wiki) 뒷페이지
참고

여기서 피고가 말한
‘또 ---’ 라는 말은
원고가 ‘또’ 술에 취해서
‘언짢은 피고의 기분’을
드러내는 항목이다.

술에 취했던 3월 27일 밤
이후, 원고가 취할 정도로
술을 먹은 것은 3월 27일과
4월 10일 토요일 친구와
도봉산 등산 후 막걸리를
둘이서 3병(원고 혼자 1.5병
이하)을 먹었을 때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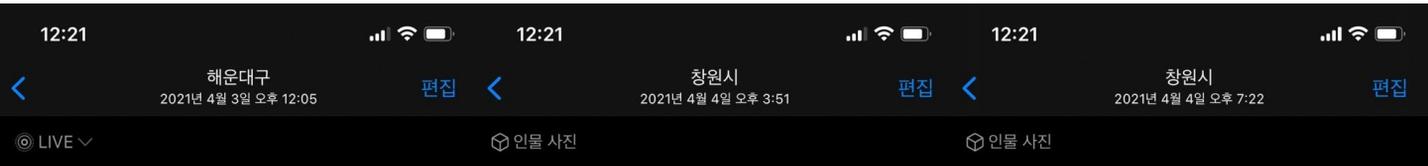
3월 27일 이후로 창원에
내려가 피고와 4월 3~4일에
직접 만났던 원고과 피고는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없으며, 그 날 외에 원고는
술을 마시거나 많이 마신
적이 없으며, 피고에게
말한 내용이 없다.

고로 4월 10일 피고의
카카오톡 내용에서 ‘또 ---’
라는 것은 3월 27일 날 밤에
원고가 술 마시다 취한
사건을 의미한다.



(‘그 와인’은 3월 27일 3차 원고 사무실에서 양주와 맥주를 섞은 와인잔에 담긴 술을 의미)
(둘이 이때까지 와인 마신 적, 이야기한 적 한번도 없음)

(3월 27일 음주 이후에 피고와 원고의 첫 만남인)
 2021년 4월 3일, 4일 부산, 창원에서 먹은 음식사진



(4월 3일 해운대 청사포 조개구이)
 창원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오고
 가야 하는 피고, 술 안좋아하는
 원고, 맥주 1병 시켜 다 마시지 않고
 기분만 내었음.

(4월 4일 밀양 단장면 카페)

(4월 4일 창원 귀산동 바닷가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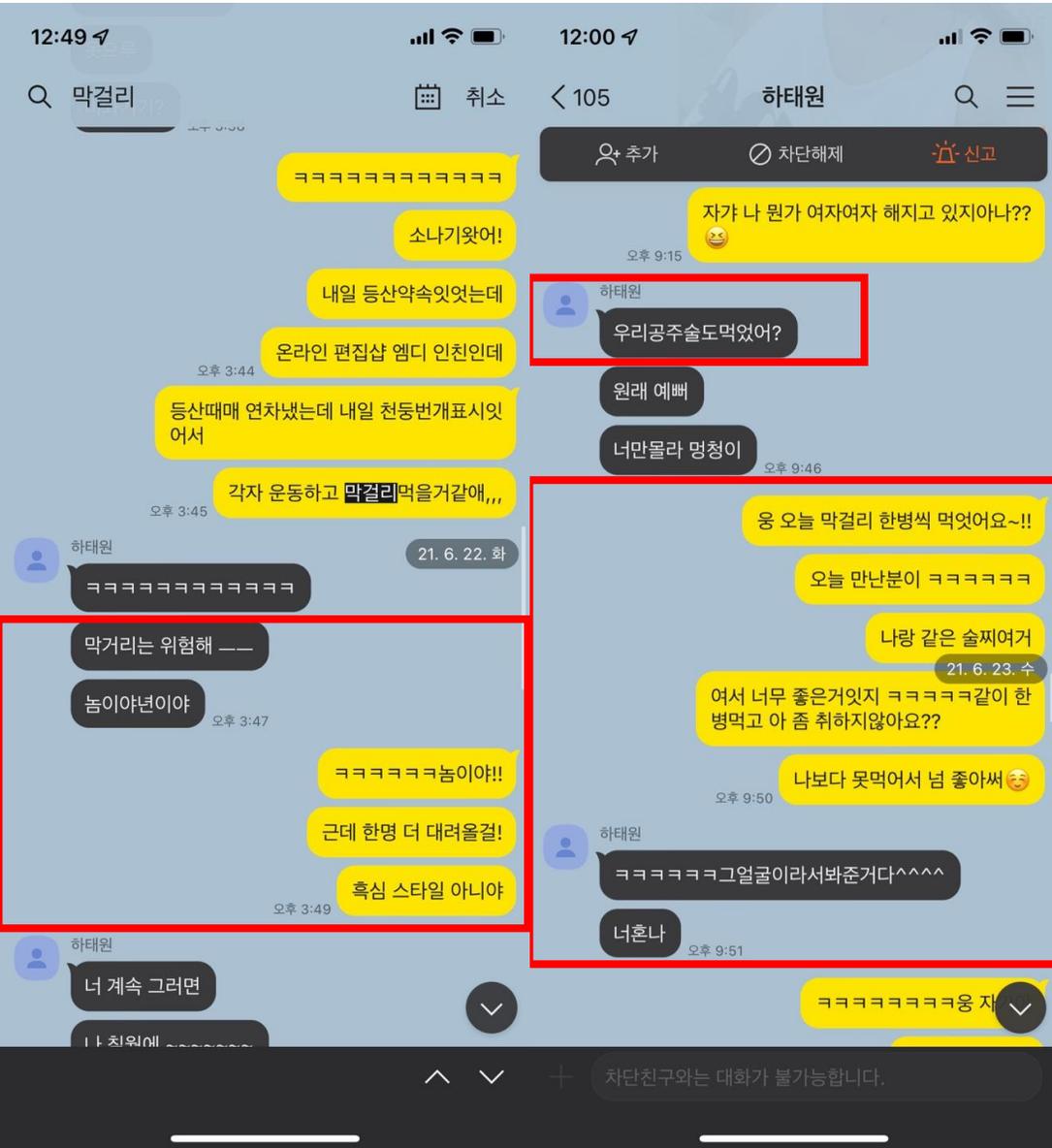
(2) 원고가 첫 번째 창원에 왔을 때 피고는 김해공항으로 마중나가 원고를 만나 부산 해운대 청사포 조개구이, 창원 귀산동 바닷가 카페, 피고가 거주하는 상남동 오피스텔, 경북 청도 미나리 삼겹살, 밀양 단장면 카페 등지로 여행을 다녔고, 원고가 서울로 가는 마지막 날(2021. 4. 5.)에는 김해공항 자동차에서 입맞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헤어졌습니다(을제3호 증 46쪽 내지 57쪽 카톡 내용 참조).

피트니스 대회 준비로 식단을 하는 피고는 술을 좋아하지만 대회준비 기간동안 술을 먹지 않았음. 4/3 밤 피고의 오피스텔에서도 술을 먹은 적이 없음.

피고가 4월4일 오전부터 직접 운전해서
 1. 경북 청도에서 미나리 삼겹살을 먹은 것부터
 2. 오후 3시경 밀양,
 3. 오후 7시경 창원 귀산동까지 하루 종일 운전했기 때문에 같이 원고도 피고도 음주를 한 적이 없음 / 그날 밤에도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음주한 적 없음.

2021년 6월 23일 오후 9:15 경 원고와 피고의 카톡내용

원고가 남자 지인과 등산 하기 전, 등산한 후에 막걸리를 각 1병씩 마시고와서 나눈 대화 내용



‘술찌’ - ‘술 찌질이’ 라는 뜻으로 원고와 남자 지인이 둘 다 술을 못 먹는다는 내용,

원고가 술을 잘 못하면서 잘 취하는 술을 남자 지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 것에 걱정하고 질투했던 내용. _ 원고 주량이 실제로 소주 3병이나 되는 사람이었으면 피고가 당시에 평균 도수 5-6도인 막걸리를 두고 ‘막걸리는 위험해 ---’라며 피고가 저렇게 까지 짜증을 내고 걱정했을까?

namu.wiki > 알쓰

[알쓰 - 나무위키 \(namu.wiki\)](https://namu.wiki)

알쓰 - 나무위키

‘술 찌질이’의 줄임말인 ‘술찌’도 알쓰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 주량을 자랑하는 분위기, 술을 마시지 못해도 술을 권하며, 마시지 못할 때에는 어디가 모자란 사람 취급으로 놀림거리를 만들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이런 고민들의 흔적으로 주량을 늘리는...

1-3. 2021.03.27 준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_심신상실_3월 27일 마신 날, 주량이 4-5병인 피고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취했다고 할 정도로 (녹취록) 마신 날이면, 원고에겐 이미 주량을 한참 넘어선 양이다.

1) 피고의 주량은 소주 4-5병 정도이고, 원고는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는 마신다고 하였으며, 피고가 실제 원고와 연인사이로 만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주 2-3정도를 마셨음.

같이 소주 마신 적 한번도 없음(?)

피고는 준비서면(2페이지)에서 본인 주량이 4-5병이라고 스스로 말했다.
(실제로도 그렇게 잘 먹는다.)

그리고 다음날 일에 대해 물으니 자신도 술을 많이 먹었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4-5병 되는 사람도 많이 먹었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 날인데,
(1차에서 원고 소주 반잔, 피고 소주 한잔 씩 총 2병 안되게 마셨던 점을 감안하더라도)(그 이후 2차에서는 서로 비슷한 양을 마셨다)

주량이 반병에서 1병정도인 원고가 그날 3차 동안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며 취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박정은 어쩌다 하게 됐냐고. 너 내가 그날 다음 날에 계속 물었을 때 어쩌다 하게 됐는지 자세히 말 안 했잖아.

하태원 나는 그날 술 안 먹었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안 나. 니랑 나랑 대화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어. 하는데 새벽에 갑자

박정은 너는 거의 안 취했잖아.

하태원 내가 어떻게 안 취했나 나도 와안 먹었는데.
많이

1-4. 2021.03.27 준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_ 증거보충_심신상실상태_10분 넘게 울다가 깨서 욕해서 피고를 침대에서 내쫓아 소파에서 자게 한 사실에 대한 입증

- 1-4-1. 사실에 대한 설명 (10분 이상 울고 달래주고, 제정신 돌아와서 쌍욕해서 피고가 소파에 내려갔던 사실)
- 1-4-2. 녹취록에서 원고가 욕했기 때문에 > 피고가 침대에서 소파로 내려갔다는 정황(형사 대질조사에서는 울지도 않았고 잠꼬대로 혼자 욕했다고 진술)
- 1-4-3. 원고가 갑작스럽게 화를 내 허겁지겁 옷을 입고 소파에 정신없이 내려간 피고는 바지에 소파의 스프레이가 묻었고, 다음날 나갈 때 원고 집에 바지 두고(버리고) 감.
- 1-4-4. 2021년 3월 28일 준강간 다음날, 강간 당일 피고와 헤어지고 바로 원고의 아는 동생이 사무실에 놀러 왔고, 원고는 동생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고민함, 피고에게도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 했다고 카톡으로 전달 '사랑한것도 얘기했나' '놀랐겠다' '울다가 욕하고' '보살이냐' 카톡 내용
- 1-4-5. 2021년 3월 28일 오후 9시 놀러 온 동생이 해당 소파에 앉아있는 사진 (실제로 동생이 놀러왔었던 사실과 소파 스프레이에 대한 증명, 피고와의 카톡내용 '그 페인트 묻는 의자, 페인트 얘기 안해줬니')

3/27~28 피고와 원고의 사건 발생 경위 정리-1

오전 10:30분경
원고와 피고
인천공항에서
첫 만남

오전 11:30~
오후 3:30경 까지
영등포 더현대 백화점
방문

지하철 이동 중
교통카드를 1인당 1개씩
찍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
무임승차를 했던 피고,
서울에 와본 적이 잘 없구나,
잘 대접해줘야 겠다고
생각한 원고

오후 3:30~
동묘 원고 사무실로
이동,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준 피고

오후 7시경~
이태원으로 이동,
1차 술자리로
이자카야에서 탕에
소주 2병 덜마심

오후 9시경~
2차 술자리로 '넘버
7'이라는 곳에서
게임을 하며 같이
칵테일 5잔을 마심

3차 술자리 시작,
근황얘기, 연애이야기를
주제로 시작하며 원고가
와인잔에 담긴 술을 몇 모금
마시며 '부동산 친구를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고민이다' 라는 마지막 말만
기억에 남기고 심신상실의
상태가 된 원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피고에게 대접할 상을
차리기 위해 과일과
양주를 꺼내고
직접 두개의 와인잔에
양주와 맥주를 섞어
세팅한 원고

오후 10시경~
코로나 통금시간으로 지하철을
타고 동묘앞 역사 내 편의점
GS25에서 맥주 4캔, 과자, 초콜릿 등
구매했어서 도보 3분 거리 원고
사무실로 이동

원고 - 기억○ 의식○

**심신상실의
상태가 된 원고와
피고의 성관계
발생**

'맛있다' 등의 피고의 말소리와
자극에 갇힌 원고는 자신이 옆드려 있고,
뒤에 피고가 있고 정액을 닦아주는
느낌을 느낌, 당시에는 리얼한 꿈인
줄 알고 '형이랑 나랑은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하며 엉엉 울기 시작,
'진짜 우는 거야?' 당황해하며 '여자랑
남자가 술 먹다보면 이런 일도
있는거야' 하며 우는 원고의 등을
토닥여 줌. **10분 이상 오열**하던
원고의 울음이 그칠 때 까지
자상하게 달래 줬던 피고

원고 - 기억○ 의식△

스스로 우는 소리에 점차 정신이 돌아온
원고,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에게 '이
씨발새끼야, 내가 니 침대에 절대 못
올라온다고 했지. 내 옷은 왜 벗겨져 있고
내가 술 취한 사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야 하는데. 미친새끼야 빨리 내 옷 내놔
내 티셔츠 어딨어'라며 **쌍욕하며 피고를
침대에서 소파로 내쫓은 원고.**
'그럼 잠은 소파에서 자면 되지?'
'도대체 내가 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데' 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갈까'
큰소리로 화를 낸 피고, 날씨가 추워 서울
지리도 모르는 피고를 내쫓기 곤란해 '일단
자고 내일 일어나서 이야기 하자' 했던 원고

3/28 아침 눈을 뜨고 숙취에
괴로워 하던 원고, 좌로 우로 돌릴
때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와중에 원고와 자신의 모습을 셀카
촬영했던 피고,
'찰칵'소리만 듣고 당시에는
피고에게 아무 말 하지 않은 원고

겨울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제대로 된 이불 없이
밤새 추위에 시달리던 피고,
온수매트가 있는 **원고가
자는 침대 옆 가장자리에
붙어 다시 잠을 청한 피고**

다시 곧바로 잠에 든 원고,
테이블을 치우고
캐리어에서 본인
세면도구까지 꺼내
샤워까지 하고 잔 피고.
자신의 검정 바지를 입고
**소파에 눕다 밤새 추워서
덮어놓은 천을 벗겨 감싸다
바지에 페인트가 묻은 시점.**

3/27~28 피고와 원고의 사건 발생 경위 정리-2

3/28 아침, 피고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은 원고, 피고는 무용담을 이야기 하듯 신난 태도로 어젯밤 일을 얘기,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몇 번을 물어도 설명하지 않음.

점점 원고의 몸에 자꾸 손을 올린 피고, 손을 쳐내며 '난 이제 맨정신이고, 너랑 성관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 원고, 5차례 이상 원고의 몸에 손을 올린 피고, 전날 과음으로 인해 머리도 아프고 몸에 힘이 없어 점점 떼어지지 않는 피고의 세지는 손 힘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됨.

이제는 손이 아닌 원고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 말과 행동이 안 통하는 성욕 앞에 이성을 잃은 것 같은 피고를 보고 원고는 두려움을 느낌.

오후 12:50
속이 쓰린 원고의 해장을 위해 원고 사무실 근처 국밥집에서 삼계탕, 만두국으로 해장한 원고와 피고

거절의사는 말로도, 손으로도 충분히 표현했지만 온몸으로 반항하지는 않은 원고와 피고의 **2차 강간 발생**

(후에 피고는 이 일에 대해 '해줄 거 다 해주던데'라고 표현한다.)

머리는 움직일 때마다 깨질 것 같고, 몸에는 힘이 없고, 성관계 시도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 피고가 무서웠고, 욕하고 반항하다 피고에게 맞으면서 당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가만히 누워 피고에게 성관계를 당한 원고
원고 - 거부의사표현○, 반항 x

오후 1:40~
전날 술값도 피고가 거의 다 냈고 따로 피고를 대접해 준 게 없다고 생각했던 원고는 몸상태가 안 좋지만 바로 앞 청계천이라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같이 걷게 됨.

오후 2:20~
다시 사무실에 들러 피고는 창원 행 짐을 싸고, 원고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중, 피고는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를 허락없이 촬영. (을 3호증 11면) (밥 먹으러 나가기 전이 아니라 먹고 돌아온 후임.)

오후 4:00~
전날 밤일이 원고가 취해서 벌어진 소동이라, 술조절을 못한 원고 스스로 죄책감이 있어, 서울에 놀러 온 피고에게 당시에는 미안한 감정과, 환승이 필요한데 지하철을 탈 줄 모르는 피고가 염려되어 인천 공항까지 데려다 줌

오후 8:00~
피고와 카톡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세번만 더 만나 달라고 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만난 친구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 했다고 전달하니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고 알려달라고 하던 피고, '그거까지 이야기했으면 놀랐겠다'고 말했다, 원고는 '하다가 울다가 쌍욕하고' '흑역사 하나 또 만들었다' 등의 카톡내용을 서로 나누었다.

오후 6:00~
아는 동생이 원고의 사무실에 놀러 오기로 했었고, 동생과 만나자 말자 전날, 당일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터놓고 얘기 했고, 고민을 상담 했다.

오후 4:10~
공항내 네컷사진 자판기를 발견, 같이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잘 찍다가 갑자기 뽀뽀하는 사진을 남기자고 한 피고. 더럽다고 싫다고 거절했으나 어쩐지 계속 찍자고 설득하던 피고. 빨리 찍어주고 치우자 싶어 촬영해 줬던 원고.

1-4-1. 사실에 대한 설명 (10분 이상 울고 달래주고, 제정신 돌아와서 쌍욕해서 피고가 소파에 내려갔던 사실)

진심으로 이성이 아닌 형이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이랑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 당황스러웠고, 조심하며 술을 천천히 마셨는데도 내가 필름이 또 끊기다니 하는 망연자실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형이랑 나랑은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라는 말을 반복하며 꺼이꺼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엄청 울기 시작하니, 가해자는 저를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랑 여자 간에 술 먹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아무 이성적 감정 없이 우애 있게 하루 동안 놀았고, 당신은 침대를 절대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계속 신신당부를 해냈었는데, 별로 취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에게서 저런 말을 들으니 저 사람은 방금 일어난 이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소중한 사람 하나를 이런 식으로 잃었다는 생각과 몇 분 동안 꺼이꺼이 울다 보니 정신이 얼얼하기도 하며, 제가 우는 소리가 스스로 귀에 점점 커지게 느껴지며 '이 일이 진짜 꿈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라는 사실이 점점 뇌에 가득 차며,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울고 있지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점점 눈앞의 상황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점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8월 혼자 고소하며 작성했던 경위서 내용 참고)

원고가 기억을 잃고 나서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은 침대에 엎드려 있고, 피고의 인기척과 피고와 성관계했던 상황을 느끼고 꿈인 줄 알고 10분 넘게 울었던 사실이다. 당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남자랑 여자 간에 술 먹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달래주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둘러보니 제 옷은 다 벗겨져 있었고,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왜 내 옷이 벗겨져 있고 당신이 왜 내 침대에 올라와 있냐고 가해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 티셔츠는 어디 있냐고 왜 내 옷이 벗겨져 있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며 옷을 입고 왜 내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야 했냐고 온갖 욕설을 가해자에게 퍼부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왜 사람이 이랬다저랬다 하냐며 '내가 도대체 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데' 하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저 사람이 화를 내니 조금 무섭기도 했고, 당시 아직 겨울이 가지지 않아 쌀쌀했을 때라 늦은 시간에 사람을 내쫓기도 뭐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를 참고 피곤하고 술기운이 있으니까

내일 일어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잤습니다. 어느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이 있고 저 사람은 자기가 챙겨온 세면도구를 그 와중에 풀어서 화장실에서 말끔하게 몸을 다 씻고 소파에 가서 잤습니다. 그 와중에 테이블도 좀 치워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샤워를 하고 잤다는 사실에 가해자는 술이 그렇게 취하지 않고 멀쩡한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소파에 누워서 자고, 저는 침대에서 잤습니다. 침대에는 온수 매트가 있어 따뜻했는데, 소파에서 자던 가해자는 제대로 된 이불도 없었고 추웠는지 눈을 뜨니 제 침대 가장 자리에 제 옆에서 기생하듯 붙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니 전날 밤에 있었던 제정신이 아니었던 순간에 일어났던 일도 한편의 필름같이 존재했고, 더현대, 이태원을 같이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두 가지 상반되는 가해자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추워서 어찌하지 못하고 제 침대 가장자리에 붙어 웅크리고 자고있는 모습에 미안함도 조금 들었습니다.

(2021년 8월 혼자 고소하며 작성했던 경위서 내용 참고)

(2021년 대질조사 원고 피고 진술 내용 참고)

문 : 추가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답 : 다음날 피의자는 저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를 왼쪽 오른쪽 빙빙 돌정도로 술이 취했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피의자 이 성관계 요구에도 거절을 5번이상 했었습니다. 처음 거절할때는 가볍에 손으로 쳤는데 갈수록 제가 거절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힘의 강도가 세져서 힘으로는 이길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사람이 저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이사람의 눈빛도 무서웠고 괜히 맞으면서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저는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강간을 당한 후 피의자에게 화를 내니 피의자가 "나 어떻게 할까 나갈까?"라고 했었을 때 강하게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피고도 화를 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을 했던 당시 내용,
원고가 정신을 차리고 욕하며 화를 냈고, 피고가 소파로 내려가게 되었던 정황참고
(해당 원고가 했던 저 말 내용은 녹취록에서 피고가 원고가 갑자기 욕을 해서 소파 내려갔다는 내용을 뒷받침 해 준다)

답 : 제가 올라가 화를 냈을 때 "시발새끼야 내가 니 침대에 절대 못올라온다고 했지. 내 옷은 왜 벗겨져 있고 내가 술취한 사이에 왜 이런일이 벌어져있어야하는데. 미친새끼야 빨리 내옷내놔 내 티셔츠 어딤어"하니까 피의자가 입고있던 흰 티셔츠를 자에게 벗어 주었습니다. 그럼 잠은 쇼파에서 자면돼지? 그러고 쇼파에 가서 잤습니다. 그러고 저는 화장실을 간 적이없고 다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면 티셔츠가 옷이 완전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지 않았을거고 제가 그때 정신차리고 일어났을 때 당장 주워 입을수 있는 옷이 없었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문답하다.

문 : 추가로 할 말이 있나요

답 :

아까 부동산 얘기했던 것 맞습니다.
자기가 다 계산 했었고 술 사서 왔었고
4층에 올라가서 각자 옷 갈아입고 술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반정도 남은
양주랑 안주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는데,
만약 강제였으면 바로 신고 했었어야 했고
잘 때 어떡하냐 하면서 곰돌이가 아니라 날씬한
베개다. 의사소통이 되었었고,
내가 씻으러 갔을 때 혼자 테이블을 치웠다. 음식
치웠다. 같이 치웠다는 게 아니다.
서로 같이 씻고 나와서 침대 어디에 누웠는지
기억난다. 쇼파에는 깰 까봐 자신이 내려갔었다.

문 : 참고로 할말이 있나요

< 추가 >

하태원 나는 그날 술 안 먹었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안 나. 니랑 나랑 대화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어. 하는데 새벽에 갑자기 니 일어나면서 쌍욕하고 그래서 내가 놀라서. 내가 *** 했을 때 소파에 니가 *** 내려갔잖아.

박정은 이미 일이 끝난 상황이었잖아. (녹취록 1번 내용 중에서)

녹취록 당시 피고가 '일나자말자' 라는 단어를 쓴 것은 원고가 당시 술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던 것을 암시한다.

'일어나면서'와 '일나자말자'의 표준형 기재 오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해당 부분에 대한 녹취록 재작성이 필요하다.

'일어나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라는 의미가 가능하지만 '일나자말자'(일어나자말자의 사투리형 준말)는 술에서 깨어나자마자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가 더 크고 술에서 깨자마자 쌍욕했다는 당시 정황이 더 담긴다.

일어나다

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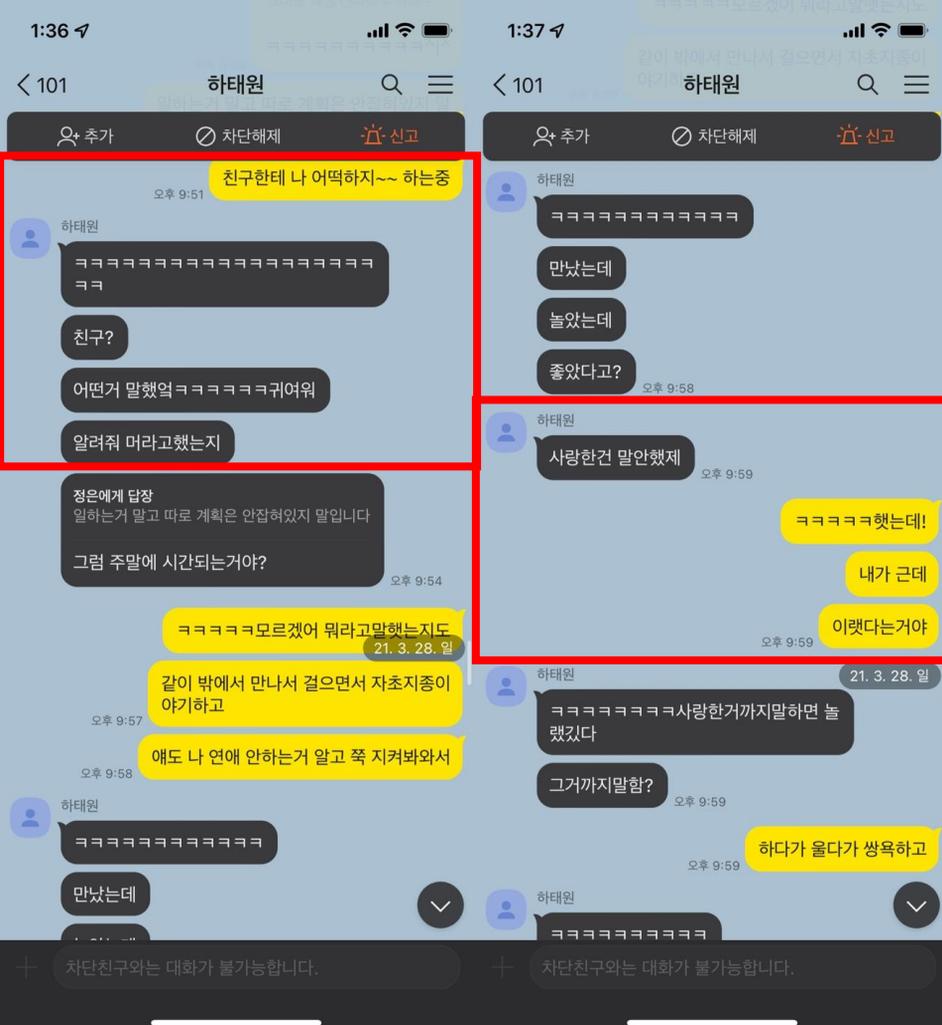
- 1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
자리에서 일어나다.
- 2 잠에서 깨어나다.
아침 일찍 일어나다.
- 3 어떤 일이 생기다.
싸움이 일어나다.

일어나다 라는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해 의식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간 상태의 원고를 이때다 싶어 강간한 것이 맞다.

1-4-3. 원고가 갑작스럽게 화를 내 허겁지겁 옷을 입고 소파에 정신없이 내려간 피고는 바지에 소파의 스프레이가 묻었고, 다음날 나갈 때 원고 집에 바지 두고(버리고)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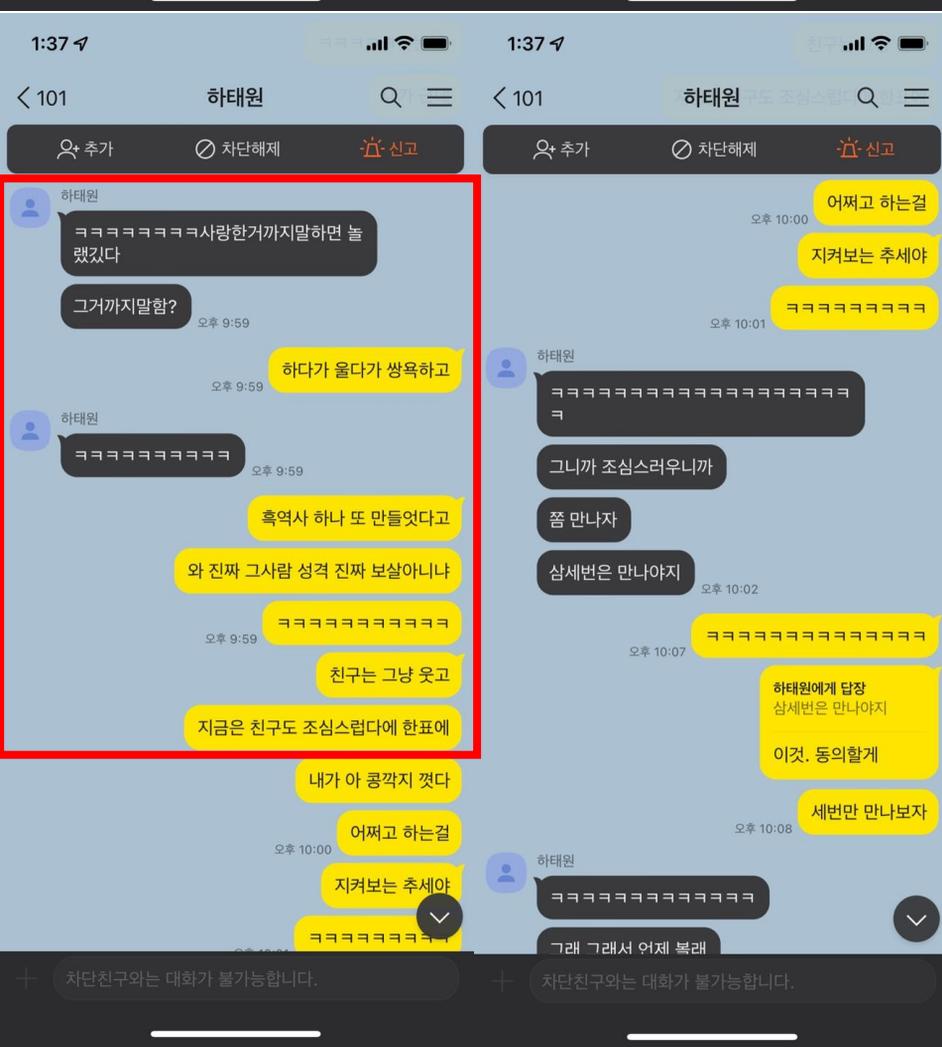




1-4-4. 2021년 3월 28일 준강간 다음날, 강간 당일 피고와 헤어지고 바로 원고의 아는 동생이 사무실에 놀러 왔고, 원고는 동생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고민함,

피고에게도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 했다고 카톡으로 전달 '사랑한것도 얘기했나' '놀랐겠다' '울다가 욕하고' '보살이나' 카톡 내용

2021년 3월 28일 일요일 오후 9:50 경



1-4-5. 2021년 3월 28일 오후 9시 놀러 온 동생이 해당 소파에 앉아있는 사진 (실제로 동생이 놀러 왔었던 사실과 소파 스프레이 페인트에 대한 이야기, 피고와의 카톡내용 '그 페인트 묻는 의자, 페인트 얘기 안해줬니')



2021년 3월 28일 피고와 헤어진 직후 사무실에 놀러온 동생.

3월 28일 동생을 찍은 영상을 동생 카톡으로 보내면서 남은 시간 기록

'그 옷 베리는 의자'에 앉아있는 동생 사진.

당시 동생은 자초지종을 듣고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했고 그 전날 밤 원고가 오래 울었고, 하태원이 달래 줬고, 정신이 들자 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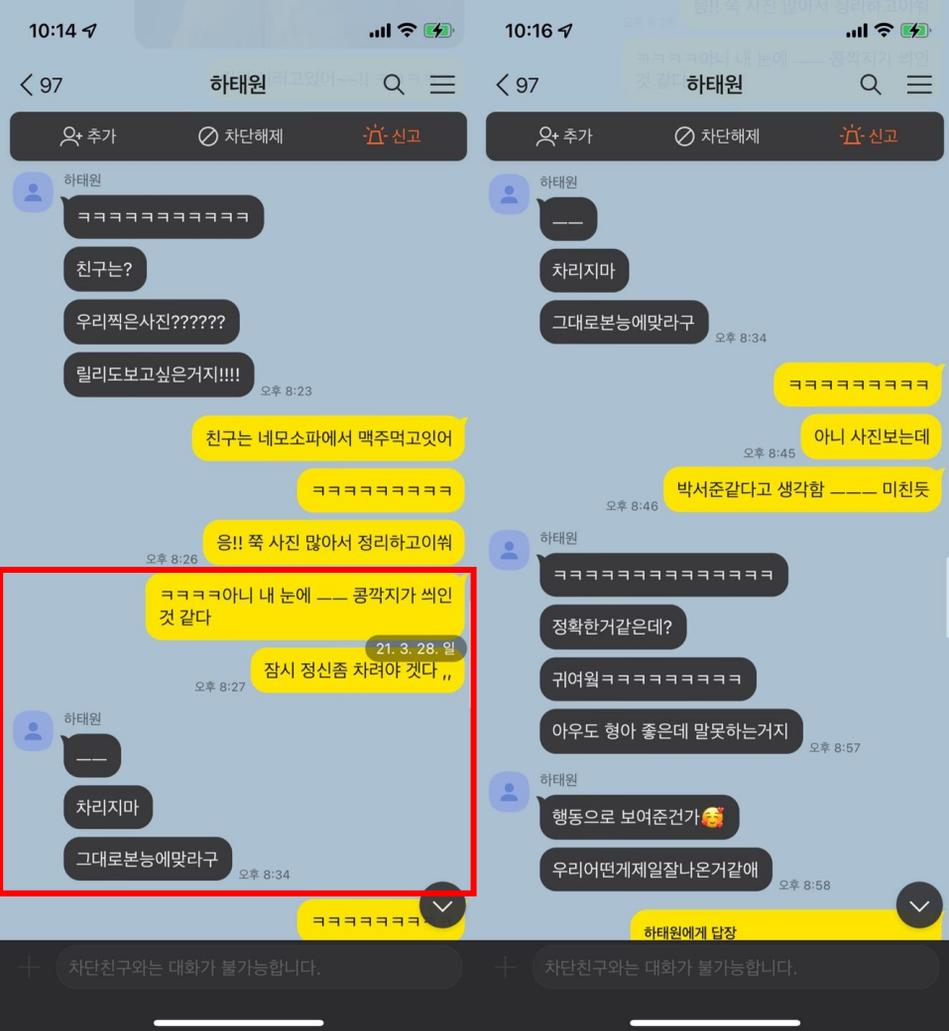
이 동생은 술을 잘 먹는 편이며, 같이 술 먹는 친구가 술 조절을 못하고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동생은 원고가 준강간을 당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10분 넘게 우는 원고를 달래주고 정신이 돌아오자 쌍욕하고 화내며 소파로 가라는 원고에게 옷을 주고 테이블을 치우고 밤새 추위에 떨다 원고 침대 옆에 기생하듯 붙어 잤던 피고를 보고 '보살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2021년 3월 28일 일요일 오후 11:10 경

‘그 페인트 묻는 의자, 페인트 얘기 안해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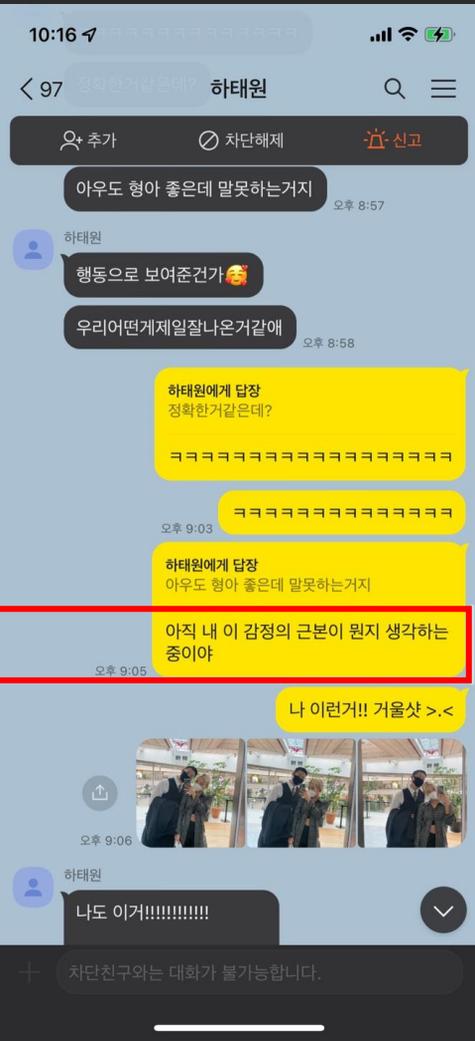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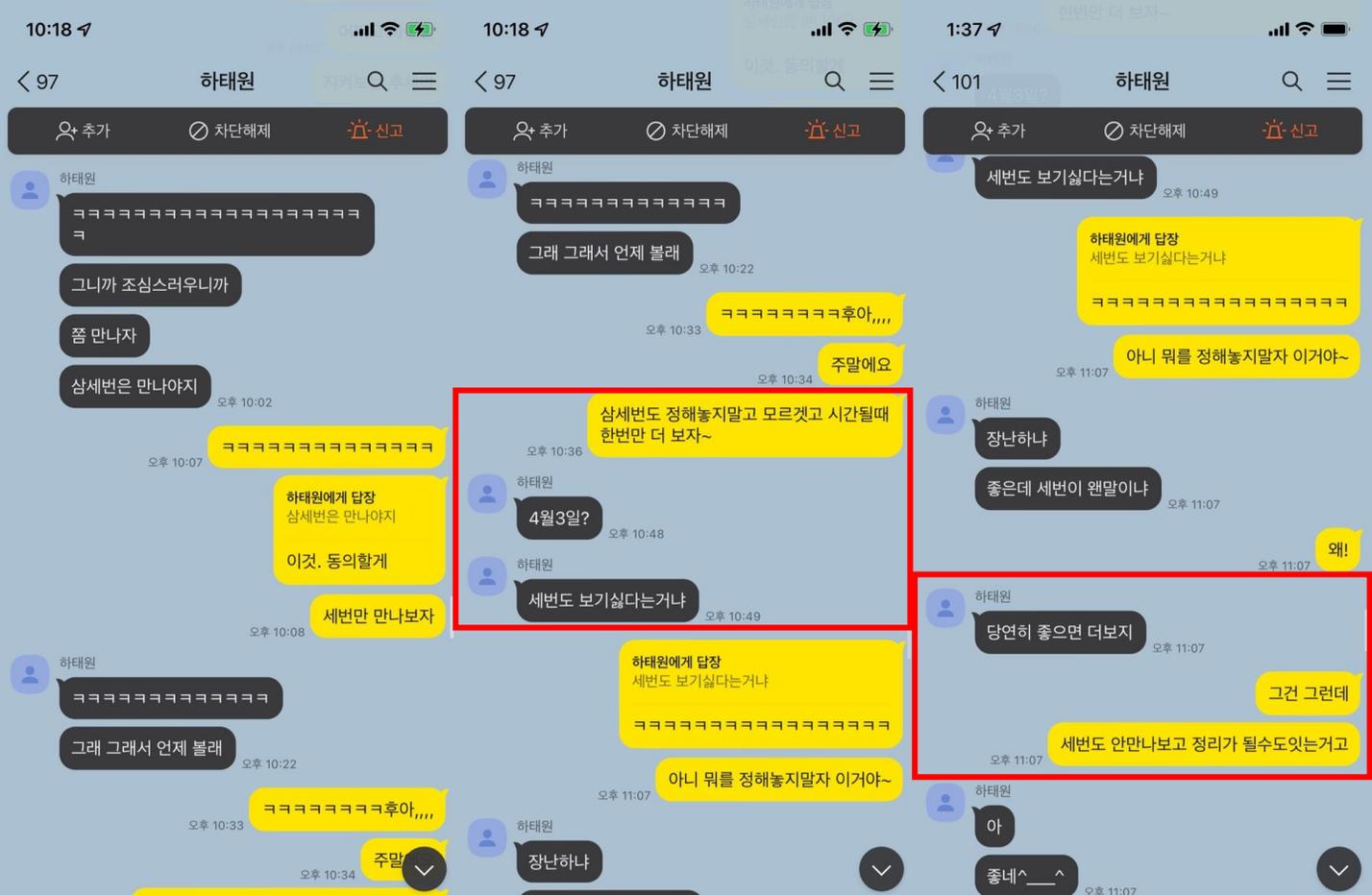
2021년 3월 28일 일요일 오후 8:30 경

자신을 술 취했을 때, 다음날 아침 강간한 피고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에 스스로 정신이 미친 것 같아서 정신을 차려야 겠다고 말하는 원고,

본능에 맞기라는 피고, 원고에게는 이성적으로 어젯밤 성관계가 원치 않는 일이었고, 욕하고 소파에서 쫓겨났던 정황상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것을 스스로도 알기에, 정신차리지 말고 본능에 맞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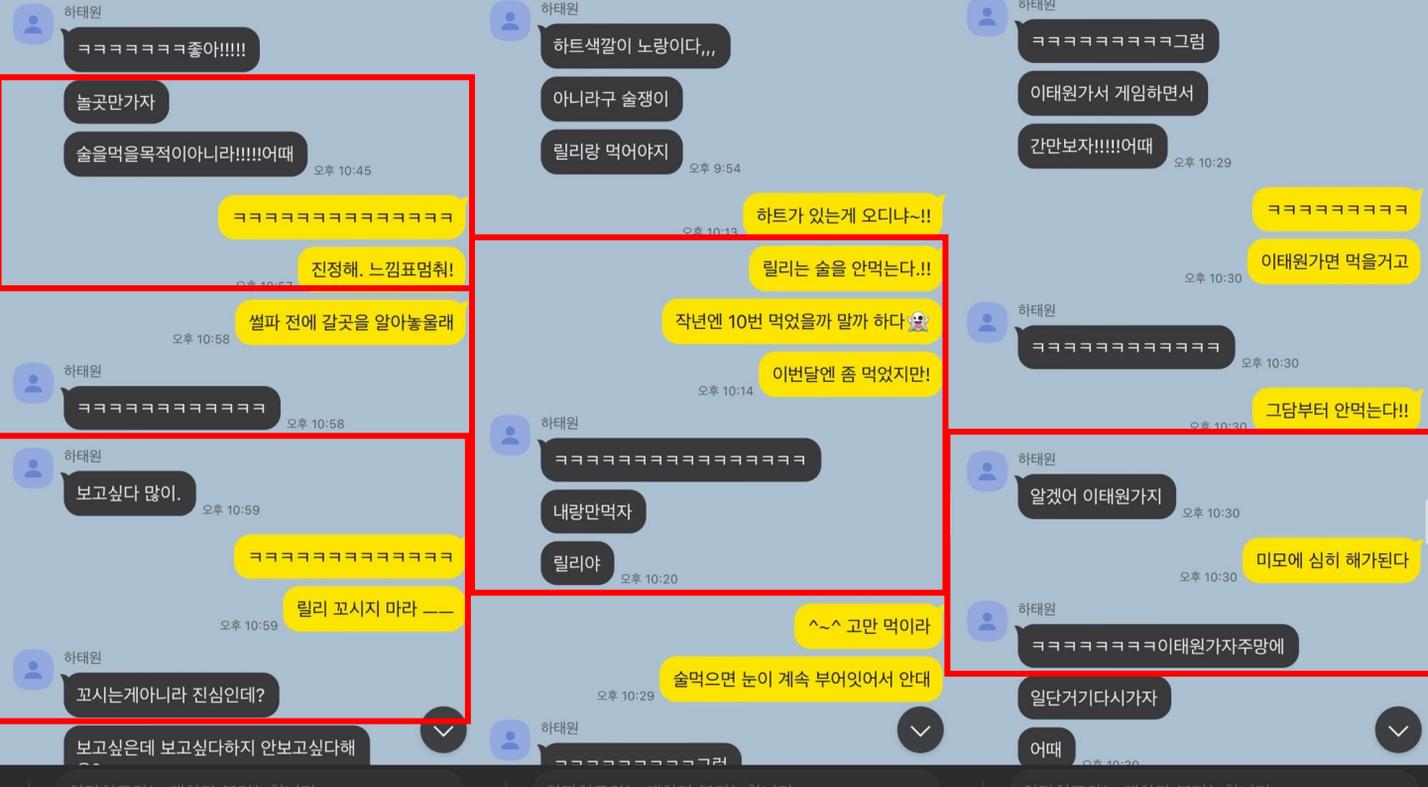
술을 먹다 원치 않는 강간을 당했던 사실과 호형호제하며 의지했던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어려운 감정에 대해 '감정의 근본이 뭔지 생각하는 중이야' 라며 피고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원고





**2021년 3월 28일 일요일 오후 10:50 경 카톡내용,
원고에게 더 만나 달라고 하는 피고,
직접 이태원에 올라오겠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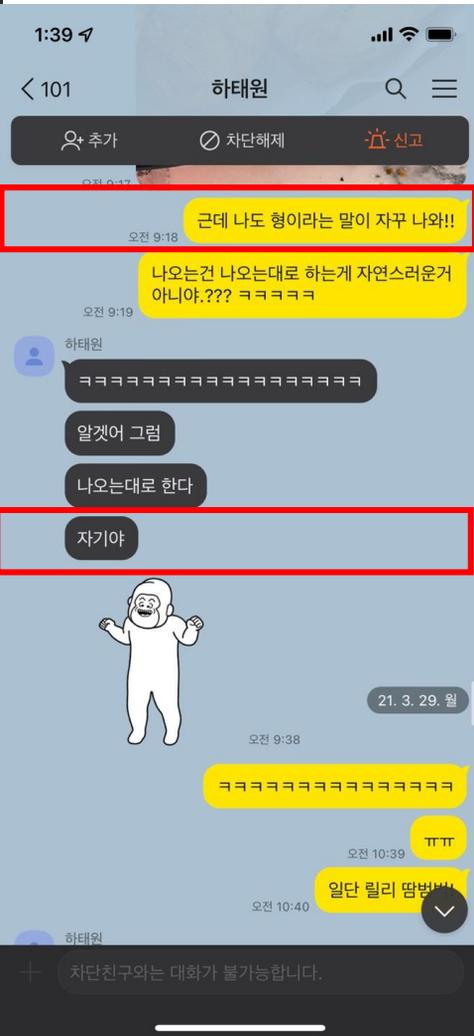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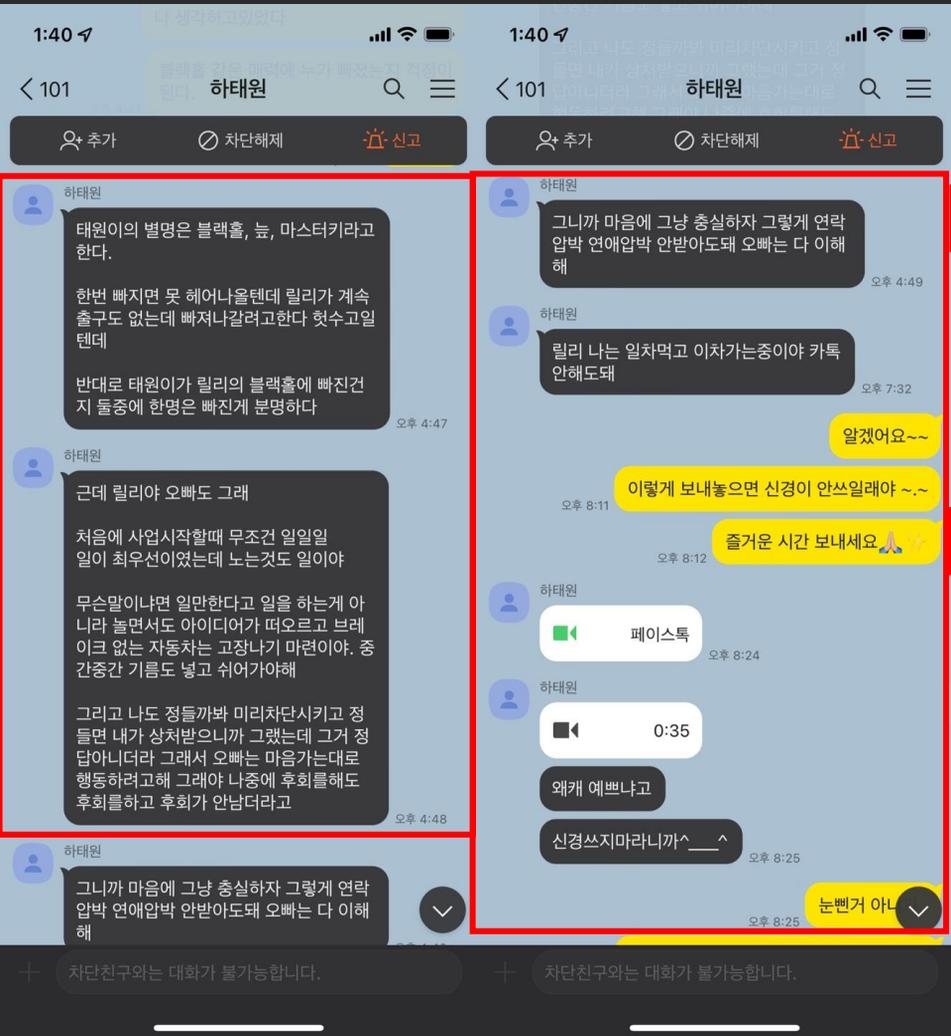
(그 후 나중에는 좋은데 데려가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내려오라고 함, 실제로 해운대, 창원, 밀양 여기저기 장소를 데려가며 원고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함.
원고는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 한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 내려가겠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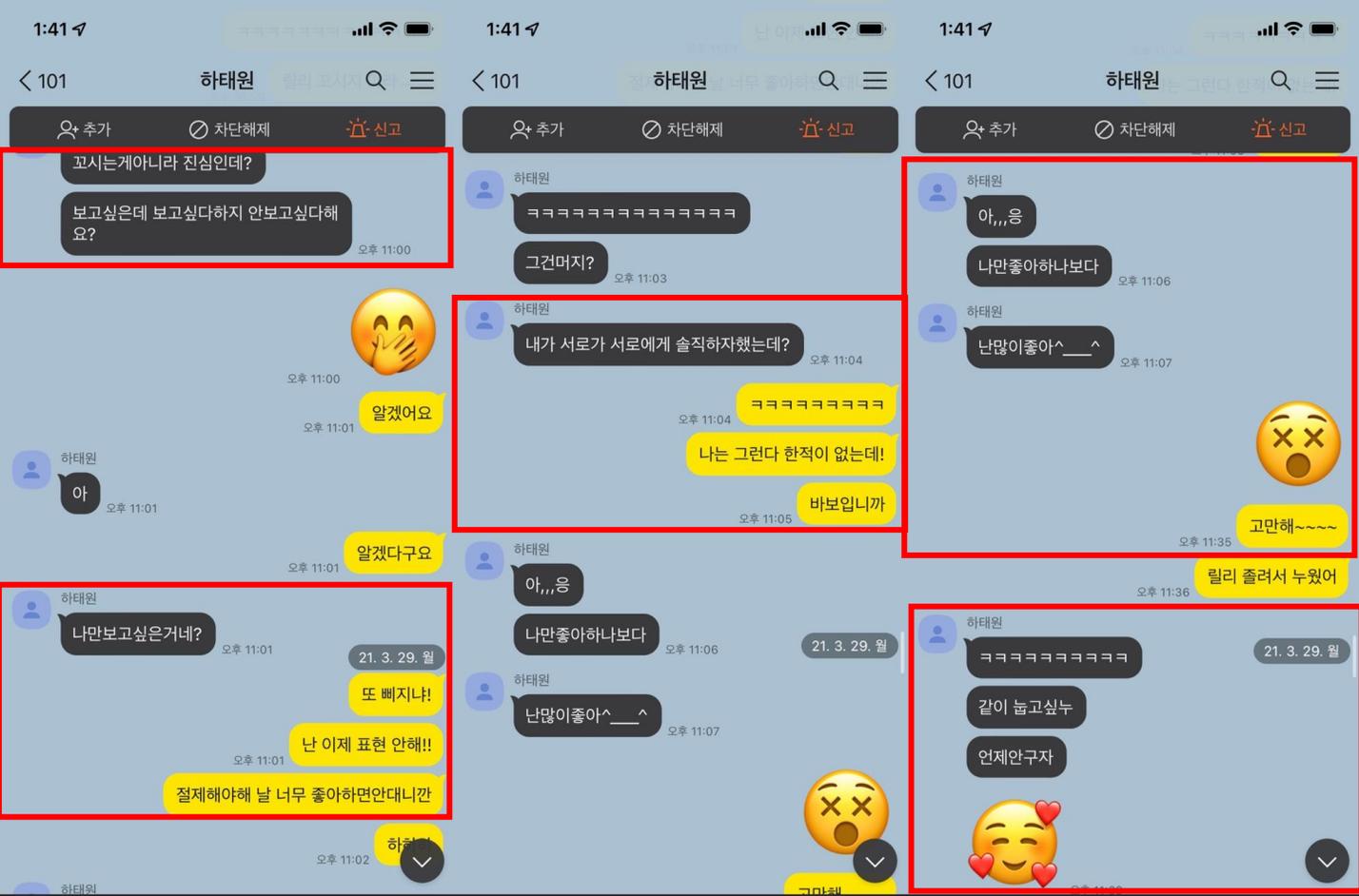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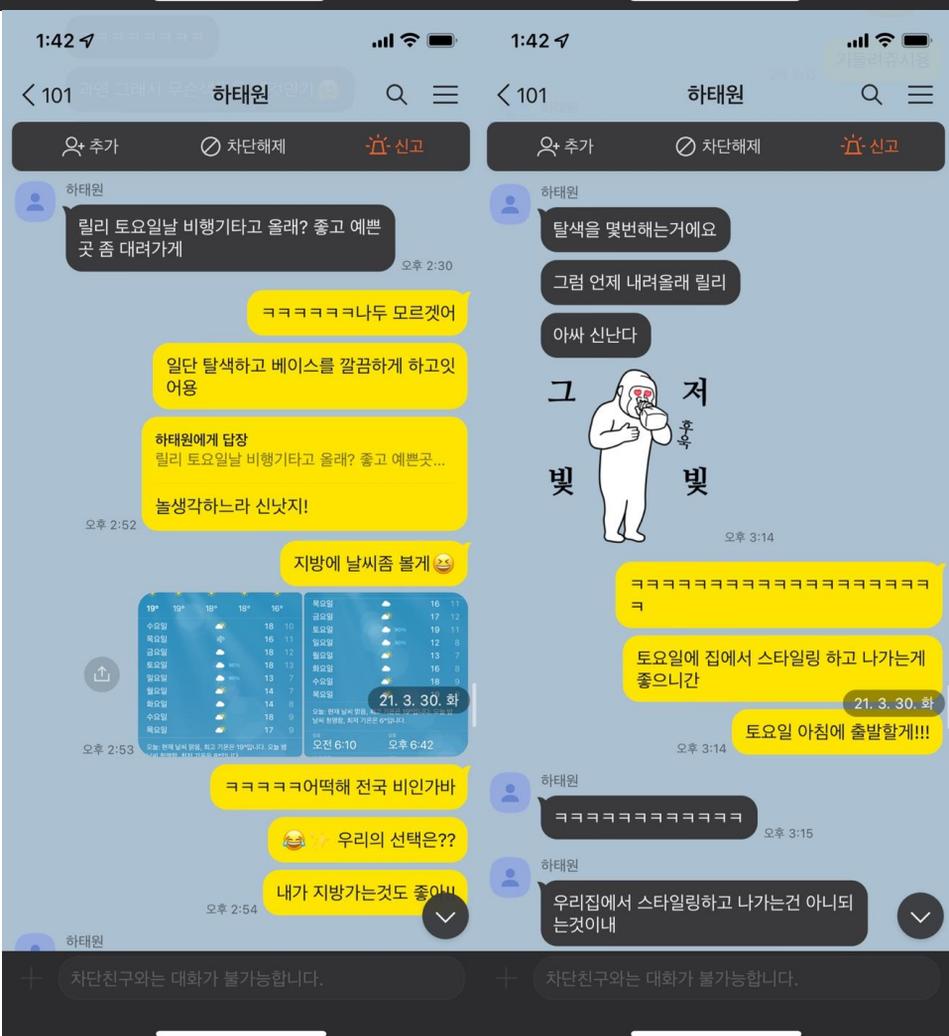
1-5. 2021.03.27
 준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_
 증거보충_2021년
 3월 28일 이후로
 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용_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방적
 만남 요구하는
 카톡내용

2021년 3월 28일 ~
 3월 29일 월요일 카톡
 내용





+ 차단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 차단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 차단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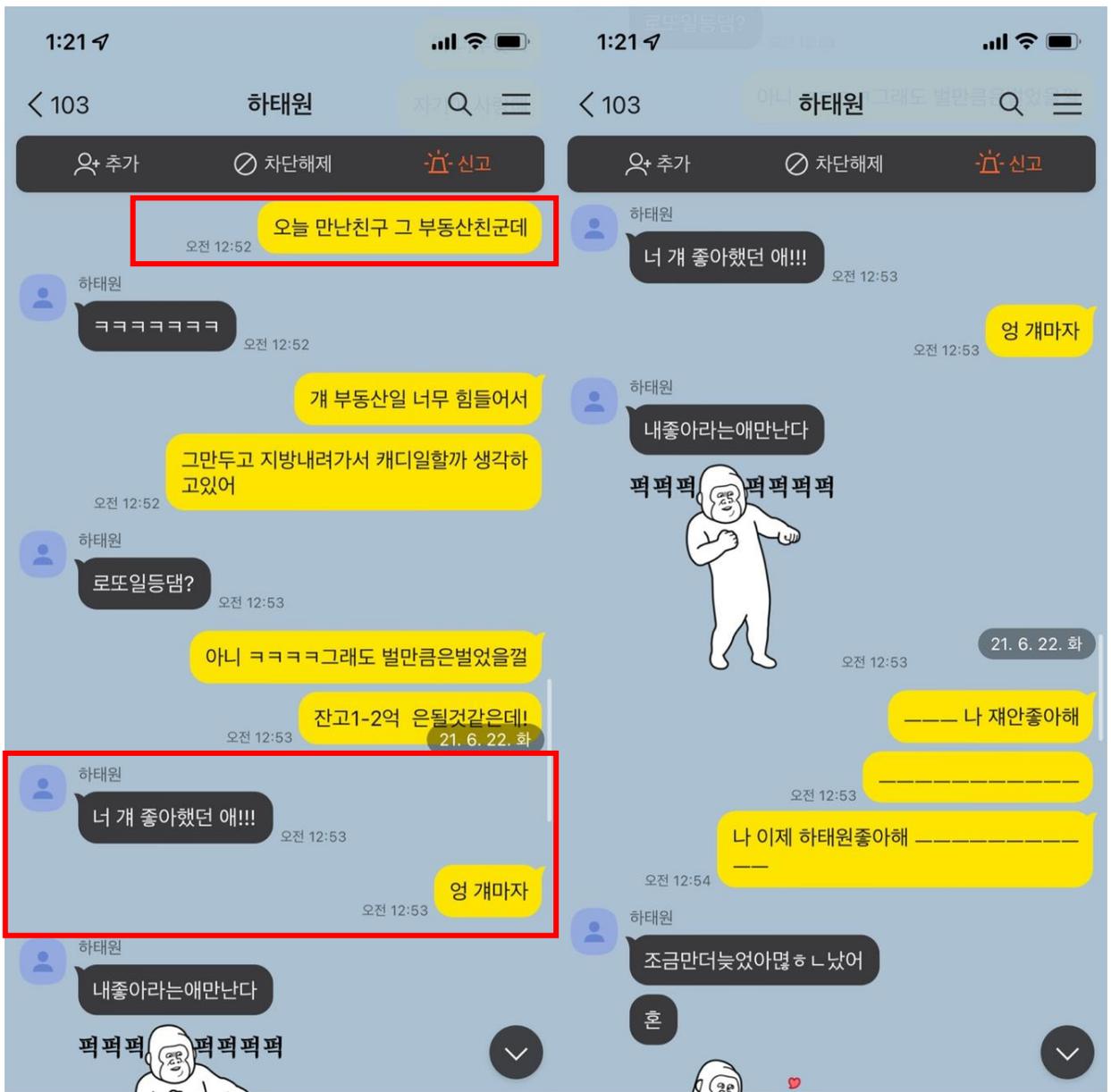
+ 차단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 차단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1-6. 2021.03.27 준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_ 증거보충_2021년 3월 27일 원고가 3차 술자리에서 당시 좋아하는 부동산 친구 있다고 말했던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

2021.06.22. 피고와 교제 당시 나눈 카톡 내용
 피고는 2021.03.27 3차 술자리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3개월이 지났을 때도 저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3.28 아침에 전날 일에 대해 물으니 대답을 회피 했었고, 2021.08.07 공항에서 사과하러 왔을 때 녹취록 기록 상에서도 그날 일에 대해 다 기억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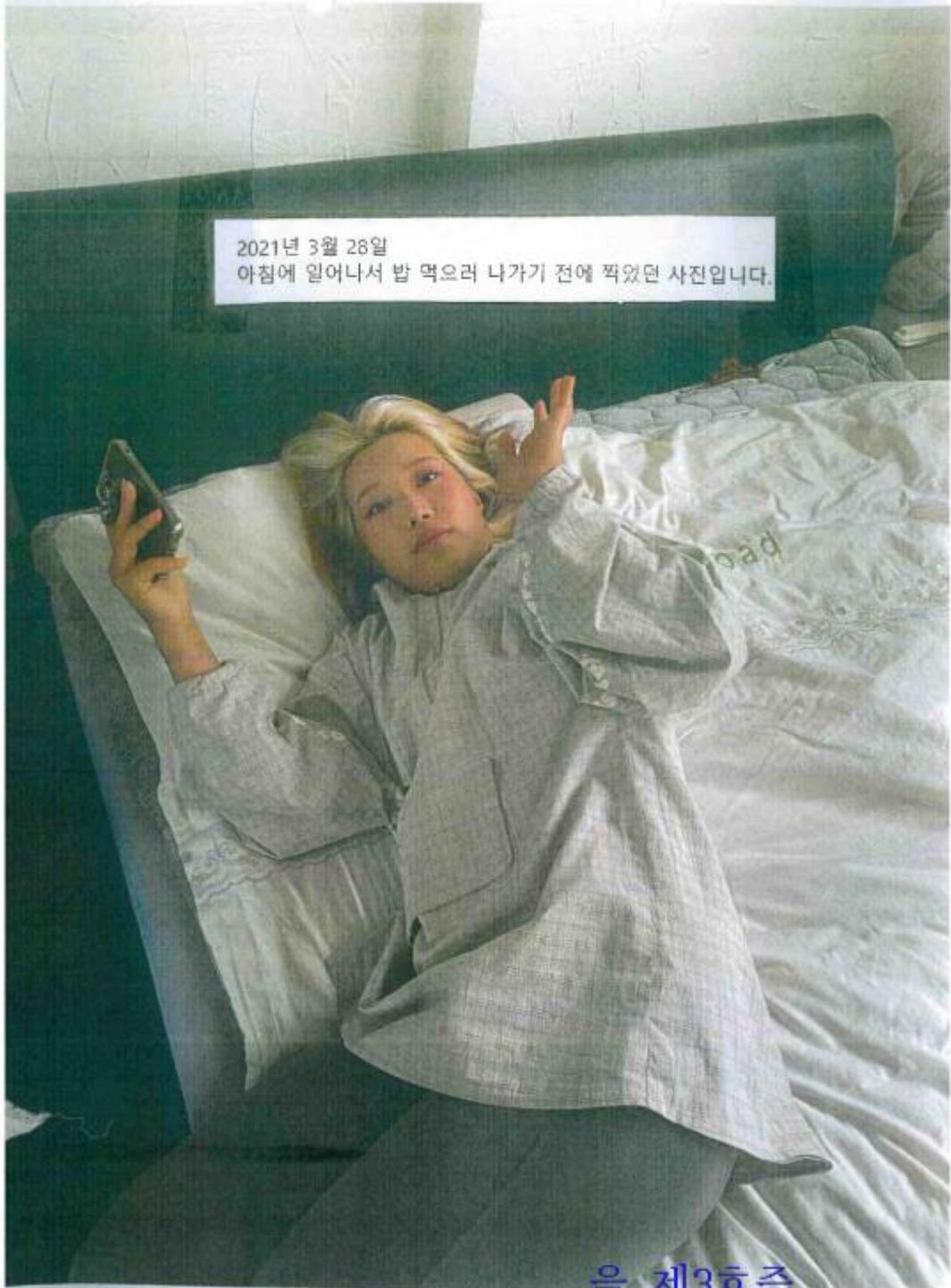
(피고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기억이 났다 안났다 하는 신기한 두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3차 술자리에서 분명 제정신이 있을 때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잃은 사이에 눈을 뜨니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이 나올 수 있는가?

해당 카톡을 보아 피고는 그날 원고가 당시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7일 원고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와중이지만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침대에서 원고를 강간한 것입니다. 그런 피고는 당연히 왜 그랬냐고 어떻게 된 일냐고 묻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나는 그날 술 안먹었나, 나도 기억 안나' 라고만 돌려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7 2021.03.28 사건 이후 속이 안 좋은 원고의 해장을 위해 사무실 근처 국밥집에서 해장을 한 사진,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누워있는 원고를 무단 촬영한 피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함. 당시 원고의 얼굴을 보면 아주 부어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 누워있음, 그것을 촬영한 피고. 원고의 컨디션이 더 괜찮았으면 사무실 내에서 다른 더 멀쩡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고 제출했을 텐데, 그런 사진은 존재하지 않음.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법무법인 로펌나무, 제출일시:2022.12.20 18:56, 출처자:박관우, 다운로드일시:2022.12.20 17:02



을 제3호증

//

2. 2021.04.18 강제적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_사실오인

당시에는 피고와 교제하는 와중이라 제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될 수 있을 까봐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될 까봐 화를 냈다가 되려 혼자 아이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 무서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톡 내용 상으로는 배란일 당일로 굉장히 위험한 날이었다는 것을 원고 스스로 몰랐어서 피임도구를 사용하자고 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했던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지,
피고가 고의로 질내 사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고의 카톡 내용을 보시면 '너무 좋아서 못참았다'라고 하였고, 공항 녹취록 상에서는 '자신도 사정하는 것을 참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 성관계 하기 전부터 하는 내내 '질내사정 한 사람이 없냐', '안에 싸게 해줘', '안돼', '제발 싸게 해줘', '절대 안돼', '싸게해줘', '안된다고', '제발 하면 안되?', '안된다는데 왜자꾸 그러냐고' 와 같이 다섯번 이상을 관계하는 와중에도 옥신각신 피고가 요구하고 제가 반대했고 나중에는 왜 자꾸 말도 안되는 걸 요구하냐며 화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관계 도중, 아무런 말 없이 마음대로 갑자기 제 몸 안에 사정했습니다.

또한 녹취록 상에서 '제가 위에 있는 상황이라 자신이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피고는 원래 사정할 것 같을 때 사정할 것 같다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자신은 질내사정을 하고 싶고, 제가 질내사정 하는 것을 반대하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질내사정을 하기위해 사정할 것 같으니 내려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월경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로 항상 공유했기 때문에 (카톡자료 참고)
카카오톡으로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지 일주일 정도 흘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제가 월경이 끝난 지 얼마 안됐다고 생각한 피고는 질내사정해도 임신할 확률이 낮을 것 이라고 부족한 성 지식으로 혼자 지레짐작해서 제 허락 없이 일부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정한 것이 맞습니다.

녹취록 상에서 '너 내가 생리 끝난지 얼마 안된 것 같아서 (질내)사정해도 될 것 같았다고 말했잖아' '그건 그 다 끝나고 나서 한 말이고' 라고 해당 말을 했었다는 피고가 했던 말에 대한 인정 하는 부분을 다시 면밀히 봐주셔야 합니다.

또한 행여나 이 일이 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이미 실제로 발생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해는 이미 피해자에게 발생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4월, 5월 월경일(생리통)에 카톡 내용 있음, 피고가 월경일에 대한 인지를 하고있음은 증명할 수 있음

4월, 5월 월경일(생리통)에 카톡 내용,

피고가 원고의 월경일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음과
생리 주기 어플로 위험한날 당일이었음은
증명할 수 있음

3. 2021.6.28.자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6.28. 경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21.7.27 부터 자궁 및 질 출혈로 치료를 받았다는 갑 5호증, 원고가 작성한 갑 10호증과 을 3호증만으로는 피고가 같은해 6.28. 강제적으로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당시 질내 출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28 강제적 성관계 이후로 성관계에 대한 당시 대화내용은 없음.

일상생활 하는 데는 자극이 없어서

산부인과

- 지금은 미란 없다는 진단서를 끊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함.
 - 소견서 - 강압적인 성관계로 자궁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궁 경부의 상처는 소변을 보는데 관계가 없어 상처를 건드리지 않아 생활하는데 통증이 없었으며, 피가 10ml 정도 났다.
 - 만약 미란이 지금도 있다면, 당시 발생한 미란이 자연치유로 되기는 어렵다. 또는 당시와는 다른 미란이다.
- 미란 : 자궁 경부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긴 상태

당시에 피가 10ml 정도 흘렀습니다.

해당 피가 내려면 상처와 자극은~~ 정도 있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통증은 없으며,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상처가 있었을 법합니다. 소견서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집에서 멍때리며 가만히 3주를 보냈습니다.

자연 치유된 상처는 염증을 남기고 아물어 있었고

3번 항목 - 강제적 성관계 당시 피가 많이 나고 상처가 났다. 피가 났던 사실은 녹취록에서만 존재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당시 산부인과 진단서가 해당 성관계가 있고 1달 뒤에 받은 진단서인데, 당시 병원에 가지 못할 정황이었다.
(일상생활하는데는 하혈증상과 통증이 없었으며, 그 후로 피고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이 점점 빠지고 있었고, 신경쇠약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으며,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같이 병원에 가 달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다. 훗날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이 힘들다는 것을 듣고 지금의 변호사를 만나게 되고 변호사가 병원 진단을 받아보라고 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고 받은 것이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당시에는 자궁 경부 미란 진단을 받았고,

1. 지금 다시 산부인과에 가서 현재는 자궁 경부 미란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2. 자궁 경부 상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
3. 당시에 성관계 당시 하혈한 피의 양을 유추해 그 원인인 자궁 경부의 상처 크기를 추정하고
4. 그 상처 크기는 굉장히 크므로, 자연적으로 치유되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야 없어졌고,
5. 그러므로 한달 뒤에 받은 진단서는 해당 거친 성관계로 인해 자궁경부가 극심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출혈과 상처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 민사소송 3번 항목 배상 청구와, - 상해죄 고소 기소가 가능할 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